■ 지방세법 시행규칙[별지 제40호의3서식] <신설 2019. 12. 31.>

| 관리번호 | - |
|---|---|

# (　　년 귀속)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
## (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)

| 거주구분 | 거주자1 / 비거주자2 | | |
|---|---|---|---|
| 내·외국인 | 내국인1 / 외국인9 | | |
| 거주지국 | | 거주지국코드 | |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❶ 기본사항 | ① 성명 | | ② 주민등록번호 |
| | ③ 주소 | | ④ 전자우편주소 |
| ⑤ 납세지 | | ※ 12월31일(사망한 경우 사망일, 출국의 경우 출국일) 당시의 주소지등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·군·구 단위까지 적습니다. 다만, 납세지를 착오기재한 경우라도 「지방세법」 제95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. | |
| ⑥ 주소지 전화번호 | ⑦ 주사업장 전화번호 | | ⑧ 휴대전화번호 |

|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⑨ 신고유형 | 32 추계－단순율 | ⑩ 기장의무 | 2 간편장부대상자 | ⑪ 신고구분 | 10 정기신고, 20 수정신고, 40 기한후신고 |
| ❷ 환급금 계좌신고 | ⑫ 금융기관명 | | | ⑬ 계좌번호 | |

### ❸ 지방소득세액의 계산

| 구　　분 | | 금　액 |
|---|---|---|
| ⑭ 과세표준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(4)의 ㊻ 과세표준란의 금액 | | |
| ⑮ 세　율: 「지방세법」 제92조에 따른 세율을 참고하여 적습니다. | | |
| ⑯ 산출세액: [과세표준(⑭)×세율(⑮)－누진공제액(⑮하단 세율표 참고)] | | |
| ⑰ 세액공제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(4)의 ㊾ ×10% | | |
| ⑱ 세액감면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(4)의 ㊽ ×10% | | |
| ⑲ 결정세액: ⑯－(⑰+⑱) | | |
| ⑳ 가산세액: 무(과소)신고란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, 납부불성실란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에 따른 가산세, 기타란에는 「지방세법」 제99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. | 무(과소)신고 | |
| | 납부불성실 | |
| | 기　타 | |
| | 합　계 | |
| ㉑ 총 결정세액: ⑲+⑳(합계란 금액) | | |
| ㉒ 기 납부한 특별징수세액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(4)의 ㉑×10% | | |
| ㉓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: ㉑-㉒ | | |

※ 세 율 표 (「지방세법」 제92조제1항)

| 과세표준 \ 귀속년도 | 2017년 세율 | 2017년 누진공제액 | 과세표준 \ 귀속년도 | 2018년, 2019년 세율 | 2018년, 2019년 누진공제액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,200만원 이하 | 0.6% | - | 1,200만원 이하 | 0.6% | - |
| 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 | 1.5% | 108천원 | 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 | 1.5% | 108천원 |
| 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 | 2.4% | 522천원 | 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 | 2.4% | 522천원 |
| 8,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| 3.5% | 1,490천원 | 8,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| 3.5% | 1,490천원 |
|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| 3.8% | 1,940천원 |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| 3.8% | 1,940천원 |
| 5억원 초과 | 4.0% | 2,940천원 |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| 4.0% | 2,540천원 |
| | | | 5억원 초과 | 4.2% | 3,540천원 |

신고인은 **「지방세법」 제95조에**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,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.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**「지방세기본법」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.**

년　　월　　일　　신고인　　(서명 또는 인)

**시장·군수·구청장** 귀하

| 첨부서류 | 1. 장애인증명서(해당자로 한정하며,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) 1부<br>2. 기부금명세서(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5호서식) 및 기부금납입영수증(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) 각 1부<br>3. 가족관계등록부(주민등록표등본에 따라 공제대상 배우자,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,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) 1부 |
|---|---|

※ 해당 첨부서류는 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59제1항 및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「국세기본법」 또는 「소득세법」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·납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